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69호 2013. 4. 30 (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 - 1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9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299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4
- 하동군 공고 제2013-317호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3 - 1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9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4. 2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81-16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369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72-4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40-20	20070618	모랫독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576-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83-13	20070618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66-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97-17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산7-2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개고개길 17-1	20080402	개의 형이라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649-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매재길 16-39	20080402	옛날 길가에 핀 매화꽃이 달과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하여 붙여진 월매재라는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길 71	20080402	마을앞 뚝뫼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19-1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1길 40	20090302	기차가 지나가는 굴다리가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14-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1길 42	20090302	기차가 지나가는 굴다리가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1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81-16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400-8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409-83	20090702	하동군 옥종면과 진주시 수곡면을 잇는 도로로 "옥종"과 "수곡"의 첫자를 혼용하여 도로명으로 사용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119-6		20090702	하동군 옥종면과 진주시 수곡면을 잇는 도로로 "옥종"과 "수곡"의 첫자를 혼용하여 도로명으로 사용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63-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뒷뜰길 109-36	20120125	정수와 접한 마을인데 의양의 뒷뜰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 동 군 공 보

(4) 제 369 호

하동군 공고 제2013-299호

하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2. 제안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 골자 :
 - 가.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화장 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화장 장려금 지원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제6조)
 - 마. 화장 장려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함(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실, 전화 880-2333, FAX 880-2349, e-mail bigbang0508@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369 호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화장 장려금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5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구당 1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화장 장려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

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	사망자		신청인			지급내역			비고
	성명	주소 (소재지)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지급일	계좌번호	지급액	

하동군 공고 제 2013 - 317호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 공시기준일 : 2013년 1월 1일
- 공시대상 : 하동읍 읍내리 48-6번지 외 16,731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주택과 부속토지의 총액)
- 공시방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홈페이지 게재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29일(30일간)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서 면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토지건축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880-2298)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